

ISO 9000

KS Q ISO 9000

SPEC

ISO 9001

KS Q ISO 9001

ISO 22000

1단계심사 안내서

KS I ISO 14001

ISO 14001



기술사인증원

- (2) 품질매뉴얼, 식품안전매뉴얼 및/또는 환경매뉴얼상의 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일반적이며 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절차를 문서화한 절차서
- (3) 특정 업무에 대한 지침 및 기법 등 특정한 관리방법을 문서화한 관련 지침서(해당되는 경우)
- (4) 2단계심사 이전까지 1회 이상의 내부감사 결과 또는 경영검토 결과서(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 포함)
- (5) 환경시스템의 경우 중요한 환경측면, 고객의 공정 및 지역에 대한 필요한 정보수집, 심사의 세부사항에 대한 고객의 동의

4.2 고객은 또한 각 문서의 최신판을 식별하기 위한 문서대장 또는 동등한 관리방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4.3 1단계심사는 심사규격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문서가 존재하고 관리상태에 있으며 이행을 위해 배포되는지의 확인을 포함합니다. 1단계심사는 문서의 유효성을 심사하지는 않으며, 이는 이행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2단계심사에서 심사됩니다.

4.4 검토된 문서는 이후 심사시 고객의 시스템에 대한 추가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로서 이용됩니다. 그러므로, 심사 후, 심사원은 심사시점에 유효한 발행상태를 식별하기 위해 문서에 스탬핑할 것입니다. 통상 방침, 색인 및 개정기록 페이지의 스탬핑으로 제한되지만, 만일 개정기록에 의해 문서의 상태가 적절히 식별될 수 없다면 각 페이지가 스탬프될 수도 있습니다.

4.5 문서의 스탬핑이 문서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떤 문서를 보았다는 것을 식별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고객은 본 인증원 심사간에 문서를 개정할 수 있으나 스탬핑된 페이지 및 관련된 개정문서는 차기 심사에 있어서 개정사항의 검토를 위해 보존해야 합니다.

5. 심사기준

계약서에 나타난 심사규격이, 고객의 활동에 대해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해 검토될 것입니다. 만일 고객이 심사기준에 대해 의문사항을 갖는다면, 이는 협의될 수 있으며, 품질시스템, 식품안전시스템 및/또는 환경시스템에 포함된 활동/제품은 인증서에 기술될 인증범위와 더불어 확인될 것입니다.

인증범위가 이 단계에서 합의될지라도, 2단계심사시에 검토가 이루어진 활동들만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단계심사의 완료후 인증범위를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제품요건 및 법규요건

2단계심사시에 고객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법규요건을 다루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고객은 1단계심사시의 검토를 위해 해당 법규 요건의 사본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사원은 고객이 적용하는 제품규격의 요건을 확인할 것이며, 이들 역시 제공해야 합니다.

7. 2단계심사 계획

2단계심사 계획서의 작성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심사원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1단계심사시 현장견학을 수행할 것입니다. 심사원은 또한 2단계심사 중 방문해야 할 사업장 외부의 시설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입니다. 1단계심사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확인은 2단계심사시 확인할 예정이며, 2단계심사 계획서는 최소 2단계심사 개시 3일전에 고객에게 송부될 것입니다.

8. 보고

심사원은 심사규격, 인증범위, 2단계심사 및 사후관리심사기간(해당할 경우)에 관해 이루어진 결론을 확인하기 위한 '1단계심사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심사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시스템 요소 또는 심사규격에 정의되지 않은 심사규격의 해당요소는 1단계심사보고서에 의해 보고될 것이며, 방문에 의한 1단계심사의 경우에는 종료회의에서 이들을 고객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심사원은 또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을 행하고 고객기록의 일부로서 1단계심사보고서를 유지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